

<변경요청 1>

[홈페이지 경로] 알림정보-건설공사-업무협의절차

The screenshot shows the '알림정보' (Notice Information) se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. The main heading is '건설공사' (Construction Work). Below it, there is a sub-heading '업무협의절차' (Business Consultation Procedure). A table lists several items:

번호	업무명	주관부서	전화번호
4	5678서울도시철도 유출지하수 현황 및 이용(공급) 안내	토목처	6311-2467
3	지하철인접골작공사 협의절차	토목처	6311-2477~9, 2465, 2470
2	연결통로설치공사 협의절차	토목처	6311-2477~9, 2465, 2470
1	지하철연결통로 설치안내	토목처	6311-2477~9, 2527, 2470

The first row (number 1) is highlighted with a blue dashed box, indicating the specific request for change.

[변경사항]

1.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안내 토목처 6311-2477~9, 2465, 2470

<변경요청 2>

[홈페이지 경로] 알림정보-건설공사-업무협의절차-지하철연결통로 설치안내

● 업무협의절차

■ 지하철연결통로 설치안내

연결통로란 지하철역과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된 통로로서, 우리공사에서는 5~8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(건물 증 개축, 도시환경정비사업) 등으로 인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을 행정 및 협의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협의절차를 홈페이지내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■ 연결통로 설치효과

- 건물주 측면
 - 건물의 인지도 향상
 - 이용객의 건물이용 편의증진
 - 건물의 효용성 증대로 재산가치 상승
 - 지하철 승객 유출입 이용편의로 인한 임대수입 증가
 - 인구유발시설(백화점, 호텔, 등) 건물내 보행혼잡 최소화
 - 지하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역세권 범위 확대로 지역발전 활성화
- 지하철운영주체 측면
 - 도시철도 이용객 확대
 - 다양한 지하철 접근수단 확보로 이용객의 편의제공
 - 지하철 역사 출입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혼잡방지
 - 연결통로, 출입구 보행편의시설 확보로 사전 민원예방(노약자, 장애인 등)

■ 설치대상 역사

현재 운영중인 도시철도(5, 6, 7, 8호선) 152km, 148개역사
• 5호선(방화~상일, 마천 52.3Km) : 51개역
• 6호선(응암~봉화산 35.1Km) : 38개역
• 7호선(장암~운수간 46.9Km) : 42개역
• 8호선(암사~모란간 17.7Km) : 17개역

⋮

■ 연결통로 설치신청 관련업무 담당부서

주소
우) 133-78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(6층) 토목처
전화번호
6311-2477~79, 2527, FAX : 6311-4280

[변경사항]

- 설치대상 역사

현재 운영중인 도시철도(5, 6, 7, 8호선) **162.2km, 157개역사**

- 5호선(방화~상일, 마천 52.3Km) : 51개역
- 6호선(응암~봉화산 35.1Km) : 38개역
- 7호선(장암~부평구청 **57.1Km**) : **51개역**
- 8호선(암사~모란간 17.7Km) : 17개역

- 연결통로 설치신청 관련업무 담당부서

- 주소

우) 04806

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(6층) **토목처**

- 전화번호

6311-**2477~79, 2465, 2470**, FAX : 6311-4280

<변경요청 3>

[홈페이지 경로] 알림정보-건설공사-업무협의절차-연결통로설치공사 협의절차

● 업무협의절차

① 연결통로공사 협의절차

연결통로란 지하철역과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된 통로로서, 우리공사에서는 5~8호선 지하철을 0 용하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(건물 증·개축, 도시환경정비사업) 등으로 인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께 행정 및 협의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협의절차를 홈페이지내에 게시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■ 관련 법령

- 철도안전법, 도시철도법,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에 관한 규칙
- 지하공공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-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등

■ 연결통로 설치 일반사항

- 연결통로의 형식 : 건물전용 통로, 공공겸용 통로, 공익용 통로
- 연결통로 규모
 - 폭 : 6m 이상, 높이 : 3.0m 이상
 - 건축마감 및 설비 : 우리공사 시설기준에 준함
- 연결통로 설치위치
 - 기존 출입구 원형(도시철도 기능상 지장이 없는 위치)
 - 사유지내 연결통로의 출입구 설치시에는 24시간 개방 가능구조
 - ※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위치, 규모 등의 세부사항은 사전 신청인과 우리 공시간 협약체결 및 협의 완료 후 시행가능

■ 연결통로 설치시 제출서류

- 연결통로 설치관련 제반 설계도서 등
- 공사관련 제반서류 등
-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
- ※ 제반서류 관련사항은 지하연결통로 설치안내 참조 및 별도 협의 후 제출

■ 연결통로 설치관련 각종 비용부과

- 재산손실금
 - 연결통로의 설치로 인해 영구히 손실되는 구조물에 대한 우리공사의 광고 또는 임대시설의 활용 기회상실에 따른 비용부과
- 기술업무지원비
 - 연결통로 공사업무 수행시 우리공사 직원의 기술지원에 대한 인건비 부과(협의~준공 시까지)
- 야간업무지원비
 - 야간 지하철 본선출입에 따른 우리공사 직원의 업무지원에 대한 비용 부과

■ 행정사항

- 연결통로설치 협약체결 (재산손실금, 기술업무지원비, 공사규모, 유지관리 등)
- 재산손실금 및 기술업무지원비 현금으로 납부완료 후 착공

■ 협의주관부서

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(6층) 토목팀 (☎ 6311-2477~79, 2527 FAX : 6311-4280)
[주소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(우편번호 133-783)]

⋮

[변경사항]

- 협의주관부서

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(6층) 토목처 (☎ 6311- 2477~79, 2465, 2470, FAX : 6311-4280)

[주소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(우편번호 04806)]

<변경요청 4>

[홈페이지 경로] 알림정보-건설공사-업무협의절차-지하철인접굴착공사 협의절차

● 업무협의절차

■ 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절차

지하철에 인접(30m이내)하여 시행하는 건축공사 및 각종 굴착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한 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며,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허가 관련기관에 통보, 공사중단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굴착공사 협의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목적

지하철 시설물보호 및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(굴착관련공사 포함) 신청 전 협의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.

-관련법규

- 철도안전법 제45조(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)
 -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시 철도경계로부터 30m이내 범위내에서 건축, 공작물 설치 등의 제한이나 점유자에게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음.
- 철도안전법 제78조(벌칙)
- 철도안전법 제77조(권한의 위임, 수탁)
-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(행위신고)
- 도시철도법 제5조 ④항(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)
 -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보상범위 안에서 도시철도 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
- 도시철도법 제23조 ③항(다른 법률과의 관계)
- 서울시 지하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(구분지상권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)
 - 지하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, 지하시설물 관리자(부서)와 사전협의<
- 철도보호에 관한 규정(1999. 5.30 개정)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
-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

⋮

-협의주관 부서

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(6층) 토목처 (☎ 6311-2477~9/2565, 2470 FAX : 6311-4280)
[주소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(우편번호133-783)]

⋮

[변경사항]

- 협의주관부서

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(6층) **토목처** (☎ 6311-2477~79, 2465, 2470, FAX : 6311-4280)

[주소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(우편번호**04806**)]